

# 전남개발공사 협력사 ESG행동규범 가이드라인

버전 1.0 (2023년 9월)

튼튼한 ESG도민파트너  
전남개발공사

## - 목 차 -

<b>1. 개요</b> .....	<b>1</b>
가. 행동규범 목적 및 대상	
나. 협력사의 책임과 역할	
<b>2. 인권</b> .....	<b>2</b>
가. 차별금지	
나.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다. 근로시간 관리	
라. 인도적 대우	
마. 결사의 자유 보장	
바. 아동노동 금지	
사. 강제노동 금지	
<b>3. 안전</b> .....	<b>4</b>
가. 안전과 보건 원칙	
나. 산업 안전	
다. 비상상황 대응	
라. 사고관리 및 중대재해 방지	
<b>4. 윤리</b> .....	<b>6</b>
가. 기업 윤리 원칙	
나. 투명경영 및 부패방지	
다. 불공정 거래 방지	
라. 내부 고발자 보호	
마.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보호	
바. 지역 사회 공헌	
<b>5. 환경</b> .....	<b>7</b>
가. 환경법규 준수	
나. 오염예방 및 자원절감	
다. 친환경 시공 및 자원 효율성	
라. 생물다양성	
<b>6. 경영체계</b> .....	<b>9</b>
가. 기업 성명서 공시	
나. 개선활동	
다. 교육훈련과 의사소통	
라. 상생 및 지역사회 공헌	

본 『협력사 ESG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은  
전남개발공사와 직접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협력사는 본 전남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및 가이드라인을  
임직원에게 적절하고 충분히 의사소통 하여 따르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요

### 가. 행동규범 목적 및 대상

‘전남개발공사 협력사 ESG 행동규범’은 전남개발공사의 협력사 또한 안전, 인권, 환경, 윤리, 경영체계 5 가지 분야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며,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체계 구축하는 등 전남개발공사가 협력사에 요구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공기업으로, 공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ESG 경영 실천을 요구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본 행동규범을 통해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ESG 행동규범은 협력사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 인권, 안전, 윤리 및 경영체계가 최선의 운영관행을 조성하여, 지역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고 전남개발공사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 혹은 규제기관이 관할하는 사항은 본 행동규범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길 원하며, 본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인 모든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등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나. 협력사 적용 범위

전남개발공사의 모든 협력사는 경영에 있어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와 공사의 위탁을 받은 제 3자 기관은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는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개선 사항에 대해 리스크 완화를 위한 노력을 취하여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ESG 경영 확산을 위한 행동규범사항이며, 지속가능한 협력 및 상생경영을 위해 본 행동규범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를 통해 본 행동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www.jndc.co.kr>  
담당부서 : ESG혁신TF팀  
연 락 처 : (061) 280-0413, 0615)

## 2 인권

### 가. 차별금지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장애, 나이, 신체적 조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채용, 승진,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의 모집, 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나.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협력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임금산정 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경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다. 근로시간 관리

협력사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 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 라.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고지하며,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괴롭힘을 금지해야 하며, 직장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에게는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마. 결사의 자유 보장

협력사는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교섭단체 설립과 운영을 허용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의 대표자와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의 대표자 부재 시 개별 근로자가 교섭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하도록 합니다.

#### 바. 아동노동 금지

협력사는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 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아동노동에 관여되어 있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 강제노동 금지

협력사는 근로기준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투입, 배치해야 하며, 강제노동이나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속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정신적 속박이나 채무관계에 의한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3

## 안전

#### 가. 안전과 보건 원칙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준 및 지침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나. 안전보건관리

협력사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험성 제거·저감,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을 실행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해위험작업에 주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주요 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의사소통 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다. 비상시 대응

협력사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비상사태 시나리오별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시 개정·보완하여야 합니다.

#### 라. 중대재해 방지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등 발생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누구라도 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 및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켜 재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마. 예산의 확보

협력사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합니다.

## 4. 윤리

### 가. 기업 윤리 원칙

협력사는 기업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 의사결정과 판단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나. 투명경영 및 부패방지

협력사 임직원은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득 및 횡령 등을 금지하는 공사의 청렴서약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정청탁, 알선, 공갈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악용한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뇌물 관련 법령 적용에 있어 공무원,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및 위탁받은 자 또는 법령 및 계약 등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자, 정당 임원 및 정계 입후보자 또는 기타 거래와 관련된 제 3 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이익도 약속, 제공, 제안 또는 전달하여서는 안 됩니다.

### 다. 불공정 거래 방지

협력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제 3 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라. 내부고발자 보호

협력사는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부고발에 대

한 보복행위(차별, 불공정 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공사 임직원과 관련된 신고는 비밀유지 및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 없이 문제를 공정하게 알아보고 해결책을 찾아 제시할 것입니다.

#### 마.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 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하며, 협력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는 사용에 대한 동의한 특정한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바. 지역 사회 공헌

협력사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공헌방안을 마련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5. 환경

#### 가. 환경법규 준수

협력사는 법정 필수 환경 인허가를 (ex: 배출/방지시설의 설치·운영·변경 신고) 취득, 유지하고 신고의 의무를 준수해야합니다. 또한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인허가는 폐기물, 대기 및 수계 배출물, 우수, 유해물질 관리 등에 관해 법규상 요구되는 법적 인허가를 뜻하며, 방지 시설은 환경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 나. 오염예방 및 자원절감

협력사는 다음과 같은 환경오염 요소를 파악하고, 오염예방 및 자원 사용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원자재의 종류 및 사용량
- 대기오염 배출
- 오폐수 배출
- 지정(유해) 폐기물 배출
- 일반폐기물
- 토양오염 배출
- 그 외 지역사회 및 환경오염 요소

파악된 잠재적 환경오염 요소는 법정 환경요구 수준 이내로 관리되어야 하며 심각성,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오염 예방을 위한 목표관리 및 개선활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통제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중대 환경오염 요소 파악, 통제 모니터링)
- 기준치(주요 재질 별 자원 사용, 소비, 폐기물 발생현황)
- 자원 사용 및 폐기물 발생현황 정기 모니터링 체계(연1회 이상)
- 개선안 도출위한 모니터링(연1회 이상)

## 다. 친환경 시공 및 자원 효율성

협력사는 시공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자재 선정, 친환경 공법 적용 및 에너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위한 친환경 운송,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리, 시공 과정 및 완료 후 사업장 및 사업장 주변의 환경영향을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자원(원자재 및 용수 등)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수행 시 자원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라. 생물다양성

협력사는 생물다양성 보전·복원·확대를 위해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이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부정적 영향을 방지, 감소, 상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 영역 검토 시에도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6. 경영체계

## 가. 기업 성명서 공시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 책임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성명서 등을 활용하여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홍보물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 나. 개선활동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최신 법령과 규정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준수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다. 교육훈련과 의사소통

협력사는 인권, 윤리, 환경 안전보건, 노무 측면의 법규 준수와 본 행동규범 준수를 위해 관리자를 포함한 근로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의 이해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견청취 및 이행을 위한 개선활동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라. 상생 및 지역사회 공헌

협력사는 사업 운영과 관련한 모든 협력사와 상호존중의 상생관계를 지향하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협력사는 사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책임을 공유,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